

## ● 특집2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 충남 장애인인권 실태와 과제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인권취약계층이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권취약계층마다 각각의 인권침해·애로사항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인권개선과제도 달라진다.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는 장애인인권의 내용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글에서는 모두가 알아야 할 장애인인권의 항목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충남 장애인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장애인인권의 항목

장애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둘째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셋째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 1)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장애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홍보,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등의 인권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인권 항목으로서는 ①장애인의 접근성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많은 물리적, 정신적 벽이 상존하고 있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한 시설의 종류와 대상 등을 중앙부처별로 이행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접근성에는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의 세부 인권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②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이다.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③장애인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이다. 복지는 생존권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가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④관련 자치법규 정비이다. 장애인인권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조례·규칙을 통해 구현된다. ⑤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사

업·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한 과제이다. ⑥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권의식은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더불어 장애인 자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 ⑦장애인인권 대응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사안에 접수와 상담,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 2) 실질적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평등권(법 앞의 평균, 기회의 균등), 자유권(신체의 자유,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청구권(국가대상 일정한 청구 권리), 참정권(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세부 인권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주거권보장: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여부 뿐만 아니라, 화장실 분리와 같은 집에서의 원활한 훨체어 이동문제를 포함한다. ②건강권 보장: 장애로 인한 운동부족 등 이차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장애인의 건강문제이다. ③교육권 보장: 학령기 제도권 교육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 사회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직업, 평생교육문제를 포함한다. ④소득보장: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및 자립생활 영위를 위해 근로 장애인고용, 최저생계비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⑤문화권: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 등도 기본권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항목이다. ⑥장애인가족 지원: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인간적 삶도 보장되어야 한다. ⑦장애인여성 지원: 장애인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권문제 이외에 모성, 성피해 등 여성의기에 갖는 인권항목이다. ⑧장애인아동, 빌랄장애인,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원: 신체적, 정신적 영역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되는 장애인의 인간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항목이다.

### 3)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접근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장애인이 직접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자립생활은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타인의 보호를 최소화하고, 스스로 삶의 과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①자립생활·활동지원 확대: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면서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서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내 인권보호 및 시설인권 피해자 보호대책: 장애인시설내 입소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는 장애인입소자 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를 포함한 사항이다. ③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항목이다. ④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장애는 병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시설에 격리되어 보호감찰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인권의 실태

인권항목별로 충청남도 장애인은 인권적 측면에서 갖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1)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한 사회적 기반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접근성이 제한되어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주지역, 거주시설, 민간시설에는 아직도 장애인 주·정차를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미비하고, 장애인차량 주차단속이 이분화되어 있는 등 행정차원 뿐만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인권 의식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거리·시간규제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정보접근성이 배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및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찰서에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경찰관련 업무를 문자를 통해 대화하는 농아인은 충분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여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장애인당사자와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사업은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접근권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과 저학력 장애인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고, 장애인 인권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이 상존하고 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 2)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인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있으며,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특성과 후유증상 등으로 인한 2차적인 건강·보건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은 비장애인에 준하는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지역 중증장애인은 의료기관이 먼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한된 교육권은 장애인의 능력개발 차원뿐만 아니라 취약한 정보접근권의 원인이 되고 있다.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이 부족해서 장애인은 평생교육의 대상자 선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성인은 교육청 등과 연계되지 않아 정보접근에 제약이 있다.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활동보조가 주어지고 있지만, 주중에 주어진 시간에

만 보조하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는 가족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탈진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노동권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필수권리이다. 장애인은 근로, 고용, 최소생계비 등과 관련하여 비장애인과 차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에서의 노동소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학력, 경력보유 지체장애인은 오히려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도 제약되고 있다. 이동권의 제약, 정보와 기회의 부족 등으로 문화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모적인 오락·문화행사에 전시용으로 장애인을 동원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장애인으로 인한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도 열악한 상태이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기초수급자 불인정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하다. 유형별 장애의 애로사항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상태이다.

### 3)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은 아직도 요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경증장애인 위주로 지원이 되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이 미흡하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센터 지원에서 충남은 미흡한 상태이다. 시설내 인권보호와 시설인권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주시설의 종사자와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도 미흡하다. 장애인보조기기의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 충남은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상 시설장애인의 아직 많은 실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 체험홈, 기술훈련 등의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정책제언

장애인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권증진을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개선하여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편리를 도모하고, 민·형사사건 등에서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를 접근권이 더 필요한 더 소외된 장애인 중심의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도·시설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건설하여 장애인의 주거권을 신장하고, 의료·보건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농·어촌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병원으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자

## ● 특집2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령기 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에도 장애인의 교육권을 개선하고,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학력(경력단절)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편견, 정보와 기회의 부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여가 향유권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여 가계운영과 개인생활을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추행·예방·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체험 홈, 주거 등의 실질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